

의안번호	2213743
의 퇴 인	이훈기 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 계 번호	25F57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4조의36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율: 30% - 적용기한: 2028.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36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04조의36 신설)
 - 공제율: 30%
 - 적용기한: 2028.12.31.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현행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 등에서 출산장려금

항목을 구분하여 집계할 수 없음

- 출산장려금은 회계상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경조사비) 등에 포함되어 개인 및 법인 소득 산출시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되지 않음¹⁾
- 한편, 현행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은 일정한도로 근로소득에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존재하나, 이를 바탕으로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존재
 -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²⁾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집계되나, 이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은 집계되지 않음
 -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또한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아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음
 - 참고로, 최근 5년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적용인원 및 금액은 2019년 48.1만명, 3,357억원, 2023년 47.1만명, 3,414억원 등
 - ※ 2023년 이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1인당 1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 통계에서 제외됨

[표 1]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2019~2023년

(단위: 만명,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	48.1	47.0	46.1	47.2	47.1
금액	3,357	3,280	3,204	3,207	3,414

주: 2023년 이전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소득 집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도, 각 년도

□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손비처리하도록 법령을 명확화함

2)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1인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